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8시 43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주차차량과	3
건설기계사업(양도·양수, 합병) 신고	3

건설기계사업(양도·양수, 합병) 신고

2017.07.04 조회수 270 등록자
10:40

- ✓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(양도·양수, 합병) 신고

- ✓ 민원내용

- ✓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제1항.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6조의3제1항

- ✓ 구비서류 1. 건설기계사업등록증
2.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
3. 법 제21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

- ✓ 처리부서 주차차량과

- ✓ 협의부서

- ✓ 접수 차량등록사업소

- ✓ 수수료 없음

- ✓ 처리기간 10일

- ✓ 기타사항

- ✓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→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→ ③ 서류검토 → ④기안.결재→ ⑤등록증발급

- ✓ 기타참고사항

<p>첨부파일</p> <p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p> [별지 제33호의3서식] 건설기계사업(양도·양수, 합병)신고서.hwp (1540 hit/ 18.0 KB) ↓</p> <p>미리보기</p>
--	---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